

# 검단아테라자이(AB21-1BL)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I.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B21-1BL

□ 공급규모 : 지하 2층 ~ 지상 25층, 6개동, 총 709세대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 69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전용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범위)

(단위 : ㎡)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배정 세대수 (예비)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059.9958A	59.9958	20.6043	80.6001	46.2330	126.8332	14(70)
	059.9958B	59.9958	20.6043	80.6001	46.2330	126.8332	2(10)
	059.9864C	59.9864	20.8947	80.8811	46.2258	127.1069	26(130)
	059.9864D	59.9864	20.8947	80.8811	46.2258	127.1069	2(10)
	059.9507E	59.9507	20.6954	80.6461	46.1983	126.8443	2(10)
	074.9694A	74.9694	24.7959	99.7653	57.7717	157.5370	9(45)
	084.9857A	84.9857	27.9251	112.9108	65.4903	178.4012	14(70)
<b>합계</b>							<b>69(345)</b>

\* 입주예정일 : 2027년 02월 입주(예정)

\* 상기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승인기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

(단위 : 세대)

구분		59A	59B	59C	59D	59E	74A	84A	계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2(10)	1(5)	4(20)	1(5)	1(5)	1(5)	2(10)	12(60)
	장기복무 제대군인	2(10)	0(0)	3(15)	0(0)	0(0)	1(5)	2(10)	8(40)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2(10)	0(0)	3(15)	0(0)	0(0)	1(5)	2(10)	8(40)
	중소기업 근로자	2(10)	0(0)	3(15)	0(0)	0(0)	1(5)	2(10)	8(40)
	북한이탈주민	1(5)	0(0)	2(10)	0(0)	0(0)	1(5)	1(5)	5(25)
	우수선수	0(0)	0(0)	1(5)	0(0)	0(0)	0(0)	1(5)	2(10)
	철거민(이주대책대상자)	1(5)	0(0)	2(10)	0(0)	0(0)	1(5)	1(5)	5(25)
	장애인	인천광역시	2(10)	1(5)	4(20)	1(5)	1(5)	1(5)	1(5)
서울특별시		1(5)	0(0)	2(10)	0(0)	0(0)	1(5)	1(5)	5(25)
경기도		1(5)	0(0)	2(10)	0(0)	0(0)	1(5)	1(5)	5(25)
<b>계</b>		<b>14(70)</b>	<b>2(10)</b>	<b>26(130)</b>	<b>2(10)</b>	<b>2(10)</b>	<b>9(45)</b>	<b>14(70)</b>	<b>69(345)</b>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 배정된 세대수까지 가능하며, 상기 배정세대의 "( )"는 예비 추천자 수 임.

\*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추천순위에 의하며, 사업주체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 □ 분양일정(예정사항)

구분	일정(예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4.07.19.(금)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건본주택 개관	2024.07.19.(금)	- 건본주택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상동 529-38(부천영상문화단지 내)
특별공급 접수일시	2024.07.29.(월)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09:00 ~ 17:30)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예비당첨 & 예비순번 발표)	2024.08.06.(화)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정은 분양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접수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터넷 청약 접수가 원칙이나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고령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한해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가능하며, 서류 미비 시 방문 접수 받지 않음.

## II. 신청자격 안내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07. 19.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신청자격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한차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함)
3.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 축지역 3개월)내에 있는 자

### Ⅲ.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없이 주택청약 업무수행 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 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Ⅳ. 기타 유의사항

#### □ 아래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4.07.19.(금)**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 등은 '검단아테라자이' 견본주택 및 안내 서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 자세한 사항은 "검단아테라자이(AB21-1BL)" 대표번호(☎1833-4511)로 문의 바랍니다.



